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부정경쟁행위 신고안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행위란 영업 주체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한 대가의 지급없이 타인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 조사 시정권고 제도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는 선행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는 **특허청에서 조사**하며, 조사결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부정경쟁행위의 중지(생산중단, 폐기 등)**를 권고 합니다.

신고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아목, 카목 제외)
-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행위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영업외관) 혼동 초래 행위



널리 알려진 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



원산지 생산지 또는 제품의 질양 등의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 행위



상품형태 모방 행위



아이디어 탈취 행위



국기 국장 등의 사용 행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행위

시정권고 사례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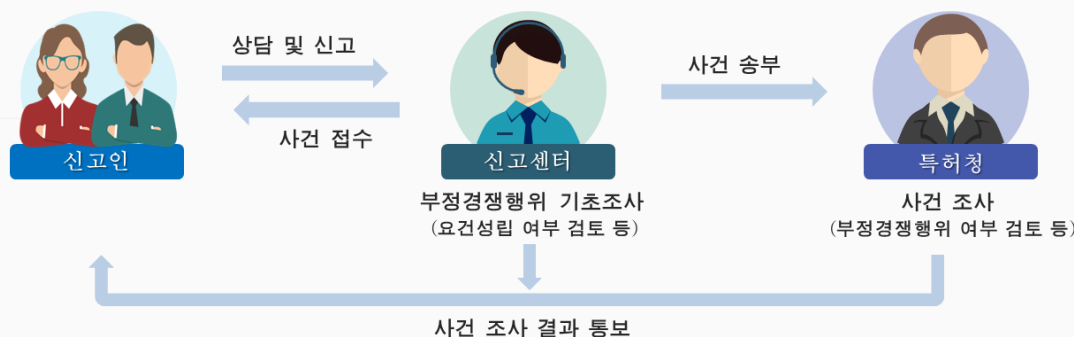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홍보한 광고 영상 방영중단 권고
(특허청 시정권고, 2018.1.17.)

상품형태 모방 행위



선행상품의 용기 포장 등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제조업체와 판매한 유통업체에 생산 및 판매중지 권고
(특허청 시정권고, 2017.12.4.)

처리절차



상담 및 신고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

☎ 02-2183-5837
✉ 5837@koipa.re.kr
🌐 www.ippolice.go.kr

